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48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변론 종결 2021. 2. 3.

판결 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전5020호로 'D은 원고에게 36,753,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F(2019. 11. 24. 사망)의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D, 피고 및 G, H, I이 존재하고,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 D, G, H, I 각 1/5 지분이다.

다. 위 망 F의 상속인들은 2020. 3. 11. 망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3. 13. 접수제111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당진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3. 피고와 수용금 105,353,500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위 105,35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신용대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망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5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진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105,353,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상당액은 21,070,700원($105,353,500\text{원} \times 1/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1,0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보상금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한 후 D의 상속분에 대하여 처분이 쉬운 금전으로 지급한 사실은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정아

1) 원고는 2021. 1. 12.자 준비서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에 한하여 구하면서 피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1/5에 상응하는 금액인 '21,070,700원의 범위에서 취소를 구한다'고 중복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